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법제사법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10일, 박균택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5차 전체회의(2025.11.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균택의원)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
죄는 수법이 진화하는 등 전문화되었고, 범죄 건수도 증가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동기인 범죄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고, 박탈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다단계판매 방법 기망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가 범죄 피해재산을 몰수·추징 및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으로 개별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여부가 상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몰수·추징 대상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의 3에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출석요구, ▲서류 등 제출요구,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청,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의 몰수·추징에는 위 조문이 준용되지 않아 범죄수익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산 확보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①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추징, ② 범죄피해재산 추정(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강제수사 규정 준용 규정을 각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개정안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현행법상 임의적 몰수·추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법 하에서는 몰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개별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상이해지는 문제가 있음.

필요적 몰수·추징을 도입할 경우,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원의 판단범위가 한정되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 및 피해자 환부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음.

○ 참고로, 「형법」 각칙상 뇌물죄(제134조), 아편에 관한 죄(제206조),

배임수재죄(제357조)의 경우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고, 재산에 관한 몰수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6조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제6조는 각각 불법수익등과 불법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82조 등 일부 개별법에서도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범죄피해재산 중 특정사기범죄 즉, 「형법」 상 사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죄(상습범 포함)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입법례에서 특정 목적 또는 대상에 한정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입법이 가능해 보임.
- 다만,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시 법원은 몰수 대상 물건의 중요성, 피해자의 범익침해 정도, 재범 및 재유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몰수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사건별 구체적 타당성을 다소 제약할 우려가 있을 것을 보임.
- 다음으로 안 제6조의2는 몰수·추징 대상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범죄피해재산의 산정 시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자산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범죄피해자산에 관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직적 범죄를 통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추적이 어려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특정사기범죄에 있어 범죄행위와 몰수대상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
- 참고로, 범죄수익규제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죄(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제12조)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등 죄(제15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제14조) 및 허위영상물 등 반포죄(제14조의2)에 대해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두고 있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도 불법수익 또는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입증책임을 완화할 경우 피고인측이 재산의 출처 또는 형성과정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정사기범죄는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범죄추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및 범죄피해재산 추징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제약할 우려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김용민위원)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추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그 산정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개정안 시행시 진행 중인 몰수·추징 절차에도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의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함.

7. 수정안의 요지

개정안 제6조제3항은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8. 심사결과

수정의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 제6조제3항은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몰수·추징 집행 및 처분에 있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추징의 집행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③ (생략)	<u>등에 관한 법률」</u> <u>제10조의3을 준용</u> <u>한다.</u> ④·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부</u> <u>터 시행한다.</u>	----- ----- ----- -----.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월</u> <u>이 경과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u>제2조(몰수·추징의</u> <u>집행에 대한 적용</u> <u>례) 제6조제3항의</u> <u>개정규정은 이 법</u> <u>시행 당시 몰수</u> <u>또는 추징 절차가</u> <u>진행 중인 경우</u> <u>에도 적용한다.</u>
------------------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 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추징의 집행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생 략) <u><신 설></u>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u> <u>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u> <u>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u> <u>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u> <u>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u> <u>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u> <u>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u> <u>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u> <u>우에는 몰수 · 추정한다.</u>
<u><신 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u> <u>수 · 추정의 집행을 위한 검사</u> <u>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u> <u>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u> <u>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u> <u>한다.</u>
<u>② · ③ (생 략)</u>	<u>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u> <u>과 같음)</u>
<u><신 설></u>	<u>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u> <u>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u> <u>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u> <u>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u>

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
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